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9년 2월 20일
- 회부일자 : 1999년 2월 20일

3. 제안이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의 산출기준 근거조항 마련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안 제1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기준에 의거 산출 (안 제2조 제1항)
- 용어의 정비
 - 현장조사 및 시험 →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 (안 제2조 제2항)
 - 시험의뢰자는 시험결과 → 품질시험 및 검사의뢰자는 성과표 (안 제4조)
 - 공용조사 및 시험 →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품질시험과 검사 (안 제5조)

5. 검토의견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1997. 8. 25 건설교통부령 제115호로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첫째,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의 산출기준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둘째, 용어의 정비에 있어

안 제2조 제2항, 제4조, 제5조를 모법과 동일한 용어로 개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수료 산출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다만 안 제3조 (징수방법) 제1항중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하는 행정편의 주의적인 내용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항에 있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됨.